

작성 부서	복합전기부 신평택 ST전기과	<h1>자재구매규격서</h1>	작성번호 : '21-신평택-구매
			작성일자 : '21. 7.
			시행일자 : '21. 7.

품명	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
----	---------------

1. 적용범위

본 규격서는 신평택복합 6.9kV SWGR 고압차단기반 자동소화장치 구매·설치에 적용한다.

2. 적용표준

2.1 KFI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

2.2 국가화재안전기준 MFSC-101 소화 약제의 적응성 기준

☞ 본 규격서에 별도로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현재 유효한 국·내외 산업규격 및 표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표준 규격에 따른다.

3. 품명 및 규격

순번	품명 및 규격	수량(EA)
1	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소화체적: 3.11m ³ 약제량: 300g 제품타입: 자가발전 타입	34
2	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소화체적: 8.82m ³ 약제량: 850g 제품타입: 자가발전 타입	10

4. 공급범위

4.1 품명 및 규격에 명시된 규격을 가진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공급·설치하여야 한다.

4.2 유지 및 정비, 보수에 필요한 기술자료(매뉴얼 등)을 제공하여야 한다.

4.3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설비의 정상적인 설치 및 운전을 위해 필요한 기타 부속 기자재와 기술지원은 공급범위에 포함된다.

담당	차장	부장
김홍빈	신 의 기	이인용



품 명	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	작성번호	'21-신평택-구매
-----	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

5. 제작설명 및 특기사항

5.1 일반사항

- (1) 위의 명시된 규격, 품명, 수량과 일치하는 신품을 납품하여야 한다.
- (2) 계약상대자는 구매내역을 충분히 검토 후 의문 사항이 있을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하에 해당 품목을 납품해야 하며 임의대로 명기된 품명 및 규격을 해석해서 납품해서는 안되며, 이로인해 발생하는 사고나 손해에 한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.
- (3) 설치 시 제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모든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, 현장에 상주하여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.
- (4) 본 규격서의 규격대로 납품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.
- (5) 본 제품은 제품설명서 등 사용자가 사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.
- (6) 본 제품의 설치 및 운전으로 인하여 기존의 발전설비 운영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이의 제기 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- (7) 외부 노이즈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되어 노이즈에 의한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출력 값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.

5.2 구성

- (1) 감지부가 정격감지온도(범위 내 작동온도)에 도달하면 소화장치를 작동시키고 소화약제를 방출토록 하여야 한다.
- (2) 자가발전 작동장치의 감시 및 작동전원은 전원불량으로 부동작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가동축 부분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고 전선 이외의 개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자가 배선을 오결선 하지 않도록 전선의 색상 등을 달리하여 구분하여야 한다.
- (5)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(6) 작동장치의 감지부는 정격 작동온도에서 작동되어야 하며, 설치 이전 상태에서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핀을 갖추어야 한다.
- (7) 소화약제와 냉각제를 내부에 가지고 있는 용기는 스테인레스(두께 1.0mm이상)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.
- (8) 지지장치는 자동소화장치의 무게를 견디고 내진동성이 있어야 하며 방사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.

확 인

기인용



품 명	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	작성번호	'21-신평택-구매
-----	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

5.3 기능

- (1) 방호대상에 화재 발생 시 열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시킴으로써 초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어야 하며, 소화원리는 자동소화장치의 작동에 생성되는 칼륨염의 고체 에어로졸 입자가 화재의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부촉매 소화방식이어야 한다.
- (2) 자동소화장치는 취급,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.
- (3) 각 부분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이어야 한다.
- (4) 에어로졸 발생기는 전도나 진동 등에 의하여 충전된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증발되지 아니하도록 누출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5)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를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6) 방출구, 작동장치와 같은 주요부분은 내식성 재질이거나 내식 또는 방청 가공을 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.
- (7) 전기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단자, 볼트, 너트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의 재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.
- (8)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.

6. 품질보증

계약상대자는 자주적인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기자재 제작에 대한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7. 시험 및 검사

- 7.1 형식승인시험: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(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)에 따라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검증하는 시험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(KFI)에서 발행하는 형식승인서로 확인한다.
- 7.2 제품검사시험: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품목에 대해 제조사에서 제품생산 후 한국소방산업기술원(FKI)에서 발행하는 제품검사 결과서로 확인한다.
- 7.3 외관, 치수, 규격검사

확 인

기관용



품 명	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	작성번호	'21-신평택-구매
-----	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

8. 제품식별, 포장 및 운반

- 8.1 제품에는 제품의 식별관리를 위한 표시(제작사명, 모델번호, 규격 등) 이 있어야 한다.
- 8.2 자재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목재 및 비닐포장을 하되 개별구분을 두어 상자에 포장하고,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한 기자재는 손실, 파손 또는 품질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
9. 납기 및 설치장소

- 9.1 납기 및 설치 : 계약 후 90일 이내
- 9.2 설치장소 : 신평택발전(주) 지정장소

10. 하자보증

- 10.1 하자담보 책임기간 : 준공검사 완료 후 1년
- 10.2 하자보증기간 중 제품의 외관, 재질, 성능에 대하여 하자가 없어야 하며, 제품결함으로 인하여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,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.
- 10.3 설계 및 제작불량, 불량자재 사용 등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, 즉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
11. 제출서류

번호	제출서류	부수	제출시기	제출처
1	성능 인증서	1	납품 시	신평택발전(주)
2	품질 보증서	1		"
3	시험 및 검사관련 소방산업기술원 승인서	1		"
4	제품 매뉴얼	1		"

확 인

기진용



품 명	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	작성번호	'21-신평택-구매
-----	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

번호	제출서류	부수	제출시기	제출처
5	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서	1	착공 시	신평택발전(주)
6	공사 시행 공정표	1		"
7	착공계	1		"
8	현장대리인 선임계	1		"
9	준공계 및 준공검사 요청서	1	준공 시	"

※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.

단, 원본 발행부수 제한이 있는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 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. 끝.

확 인

이현영

